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수행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방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로 이체하여 배정하며,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구급역량개발팀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을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에서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변경

하고,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9.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6”을 “234”로 하며, 소방정 “17”을 “18”로 하고, 소방령 “60”을 “59”로 하며, 소방위 “62”를 “61”로 하고, 소방교 “9”를 “8”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 또는 소방령 1”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6”을 “234”로 하며, 소방정 “17”을 “18”로 하고, 소방령 “64”를 “63”으로 하며, 소방위 “56”을 “55”로 하고, 소방교 “9”를 “8”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 또는 소방령 1”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61”을 “8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55”를 “77”로 하며,

소방령 “4”를 “5”로 하고, 소방경 “9”를 “12”로 하며, 소방위 “16”을 “22”로 하고, 소방장 “14”를 “17”로 하며, 소방교 “5”를 “12”로 하고, 소방사 “3”을 “5”로 하며, 일반직 계 “6”을 “8”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61”을 “85”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55”를 “77”로 하며, 소방령 “4”를 “5”로 하고, 소방경 “10”을 “13”으로 하며, 소방위 “15”를 “21”로 하고, 소방장 “14”를 “17”로 하며, 소방교 “5”를 “12”로 하고, 소방사 “3”을 “5”로 하며, 일반직 계 “6”을 “8”로 하고,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78”을 “46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4”를 “382”로 하며, 소방령 “24”를 “23”으로 하고, 소방경 “40”을 “39”로 하며, 소방위 “65”를 “62”로 하고, 소방장 “75”를 “72”로 하며, 소방교 “95”를 “93”으로 하고, 소방사 “87”을 “85”로 한다.

별표 5의4 중 총계 “478”을 “466”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394”를 “382”로 하며, 소방령 “24”를 “23”으로 하고, 소방경 “41”을 “40”으로 하며, 소방위 “64”를 “61”로 하고, 소방장 “75”를 “72”로 하며, 소방교 “95”를 “93”으로 하고, 소방사 “87”을 “85”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과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소방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2항 관련)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         |   |
|---------|---|
| 총계      | 2 |
| 소방공무원 계 | 2 |
| 소방정     | 1 |
| 소방위     | 1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조(기획조정관) ①·② (생략)<br><br>③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br><br>1. ~ 19. (생략)<br>20. ~ 28. 삭제<br><br><u>&lt;신설&gt;</u><br><br>④·⑤ (생략)                                        | 제2조(기획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br><br>③ -----<br>-----<br>-----.<br><br>1. ~ 19. (현행과 같음)<br><br><u>29.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u><br><br>④·⑤ (현행과 같음) |
|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화재대응조사과·구조과·119구급과 및 구급역량개발팀을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구급역량개발팀장은 <u>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u>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br><br>② ~ ⑥ (생략) | 제3조(119대응국) ① -----<br>-----<br>-----<br>-----<br>-----<br>-----<br>----- <u>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u><br>-----.<br><br>② ~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279   | 277 | -2  |
| 소방공무원 계                         | 236   | 234 | -2  |
| ·                               | ·     | ·   |     |
| ·                               | ·     | ·   |     |
| 소방정                             | 17    | 18  | +1  |
| 소방령                             | 60    | 59  | -1  |
| ·                               | ·     | ·   |     |
| 소방위                             | 62    | 61  | -1  |
| ·                               | ·     | ·   |     |
| 소방교                             | 9     | 8   | -1  |
| ·                               | ·     | ·   |     |
| ·                               | ·     | ·   |     |
| 과학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 ·<br>소방정 또는 소방령 | <신 설> | 1   | +1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279   | 277   | -2  |
| 소방공무원 계                      | 236   | 234   | -2  |
| 소방정                          | 17    | 18    | +1  |
| 소방령                          | 64    | 63    | -1  |
| 소방위                          | 56    | 55    | -1  |
| 소방교                          | 9     | 8     | -1  |
| 과학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 · 소방정 또는 소방령 | <신 설> | 1     | +1  |
| 과학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 1     | <삭 제>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61</u> | <u>85</u> | +24 |
| 소방공무원 계                                                     | <u>55</u> | <u>77</u> | +22 |
| 소방령                                                         | <u>4</u>  | <u>5</u>  | +1  |
| 소방경                                                         | <u>9</u>  | <u>12</u> | +3  |
| 소방위                                                         | <u>16</u> | <u>22</u> | +6  |
| 소방장                                                         | <u>14</u> | <u>17</u> | +3  |
| 소방교                                                         | <u>5</u>  | <u>12</u> | +7  |
| 소방사                                                         | <u>3</u>  | <u>5</u>  | +2  |
| 일반직 계                                                       | <u>6</u>  | <u>8</u>  | +2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br>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u>1</u>  | <u>2</u>  | +1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br>·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br>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 <u>2</u>  | <u>3</u>  | +1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                                                           | ·         | ·         |     |
| 총 계                                                         | <u>61</u> | <u>85</u> | +24 |
| 소방공무원 계                                                     | <u>55</u> | <u>77</u> | +22 |
| ·                                                           | ·         | ·         |     |
| ·                                                           | ·         | ·         |     |
| 소방령                                                         | <u>4</u>  | <u>5</u>  | +1  |
| 소방경                                                         | <u>10</u> | <u>13</u> | +3  |
| 소방위                                                         | <u>15</u> | <u>21</u> | +6  |
| 소방장                                                         | <u>14</u> | <u>17</u> | +3  |
| 소방교                                                         | <u>5</u>  | <u>12</u> | +7  |
| 소방사                                                         | <u>3</u>  | <u>5</u>  | +2  |
| 일반직 계                                                       | <u>6</u>  | <u>8</u>  | +2  |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br>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u>1</u>  | <u>2</u>  | +1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br>·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br>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 <u>2</u>  | <u>3</u>  | +1  |
| ·                                                           | ·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478 | 466 | -12 |
| 소방공무원 계 | 394 | 382 | -12 |
| 소방령     | 24  | 23  | -1  |
| 소방경     | 40  | 39  | -1  |
| 소방위     | 65  | 62  | -3  |
| 소방장     | 75  | 72  | -3  |
| 소방교     | 95  | 93  | -2  |
| 소방사     | 87  | 85  | -2  |
|         |     |     |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4]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478 | 466 | -12 |
| 소방공무원 계 | 394 | 382 | -12 |
| ·       | ·   | ·   |     |
| ·       | ·   | ·   |     |
| 소방령     | 24  | 23  | -1  |
| 소방경     | 41  | 40  | -1  |
| 소방위     | 64  | 61  | -3  |
| 소방장     | 75  | 72  | -3  |
| 소방교     | 95  | 93  | -2  |
| 소방사     | 87  | 85  | -2  |
| ·       | ·   | ·   |     |
| ·       | ·   | ·   |     |